

2021년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5.(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7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004건(안전번호 제2021-81630호~8307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81630호~81638호(순번 1번~9번)는 블로그에서 일본 만화와 애니메이션(방송·영화)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81639호~82945호(순번 10번~1316번)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0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82946호~83074호(순번 1317번~1445번)는 웹하드 등에서 최신 영화를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7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회의록 일부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록을 수정함.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00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순번은 1번~1445번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번~9번은 실명(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에서 일본 만화 ‘●●●●●’와 애니메이션(방송) ‘○○○○○○’, ‘◇◇◇◇◇’, ‘◆◆◆◆◆’

◆ 등과 애니메이션(영화) '□□□□□'을 우리말 자막 또는 더빙 등과 함께 제공한 사안임. 총 25개의 게시물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순번 4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방송 '■■■ ■■■■' 전체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8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영화 '□□□ □□' 전체분량을 우리말 더빙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모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 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순번 8번~9번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의 경우 2021. 7. 9. 기준 ○○○○○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접근제한 조치된 것이 확인됨. 현재는 각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으나, 향후 접근제한 해제에 의하여 다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 등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게시물과 동일하게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가결 의견).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8번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가 현재 접근제한이 되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해당 블로그의 접근제한 조치 안내문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재 접근이 제한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임. ○○○○○가 블로그에 접근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 영구적으로 제한되기 보다는 일정 기간 이후 제한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A 위원: ○○○○○가 접근제한을 시킨 것이 블로그 운영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인지, 시정을 요구한다는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블로그 운영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인 조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임. 반복적으로 접근제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해당 블로그 운영자가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가 여러 번 발견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9번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순번 10번~131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다크 소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70번은 웹하드에서 게임 '다크 소울'을 1,780포인트에 제공하고 있음.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서 2016. 4. 12. 배급한 게임임. STEAM 사이트에서 49,800원에 정식이용이 가능함.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럭'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60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제공 중임. 제 112회 전체분량인 1시간 42분 1초를 제공하고 있음. tvN에서 2021. 6. 23. 공개한 방송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영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49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 모교'를 169포인트에 제공 중임. 전체분량인 1시간 48분 21초를 제공하고 있음. KTH(現 KT알파)에서 2021. 6. 17. 공개한 영화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정식이용이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0번~1316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0번~1316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131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317번~144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 공개한 영화 ‘▲▲▲▲▲▲▲▲’가 공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됨에 따라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 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73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317번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웹하드에서 영화 ‘▲▲▲▲▲▲▲▲’를 게시한 사안임. 영화 전체분량을 mkv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를 복제·전송함으로써 해당 영화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순번 1317번~1445번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317번~1445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317번~1445번은 최신 영화 저작물로서,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317번~144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1630호~83074호(순번 1번~144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8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22.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